

#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64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4.

발의자 : 박영순 · 박정 · 윤영덕  
김교홍 · 최인호 · 임호선  
조정식 · 김종민 · 양경숙  
이용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뇌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4).



##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

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의4(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) ① ~ ③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5조의4(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</u></p>